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 제안요청서 -

2024. 11.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정 책 과**

〈 목 차 〉

I . 과업의 개요	1
II . 주요 과업내용	2
III . 과업 수행지침	3
IV . 보안 대책	5
V . 예정공정표	6
VI . 제안 관련 사항	7
1.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식	7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8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서류	11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서식 1 ~ 서식 6]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2. 용역비 :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
-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은 세계 17위(월드뱅크)로 양호한 수준이나, 중소 물류기업의 경우 인력·오프라인 기반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정보화·표준화는 미흡한 수준
- 대규모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투자를 통해 물류 시설 및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IT 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 물류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5. 과업의 주요 내용

- 국내·외 물류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분석
-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 방안 검토
-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제도개선 방안 도출

II. 주요 과업내용

1. 국내·외 물류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분석

- 가. 운송·보관·주선업 등 국내 물류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현황 및 국내 주요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현황 분석
- 나. 물류분야 주요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다.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물류기술 도입 여건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장애요인(예산, 기술장벽, 인력 문제 등) 조사·분석
- 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및 국내 타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검토

2.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 방안 검토

- 가. 물류산업 분야 중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분야를 물류업종·업태·기능, 물류활동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검토
- 나. 물류산업 분야별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설정, 장애요인, 물류정보 표준화 등 선결과제 검토
- 다.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최적 디지털 기술 선정, 디지털 솔루션 보급 등 세부 실행 방안 마련

3.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제도개선 방안 도출

- 가.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한 실행체계 검토
- 다. 기타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언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부터 9개월로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 담당자 명단, 착수계 및 과업 예정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책임자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과업참여자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23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로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청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자. 과업수행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

시행대상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선정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카.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 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며, 마스터 또는 오프셋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전산작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 시행한다.

나. 성과품 제출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준공 시	30부	
최종보고서CD	과업준공 시	2매	

IV. 보안 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붙임> 서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 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 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
-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하지 않으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에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V. 예정 공정표

주요 내용	과업추진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 국내·외 물류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분석									
2.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 방안 검토									
3. 중소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제도개선 방안 도출									
※ 각종보고 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공정률(%)	10					50			100

VI.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6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기술·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나. 평가 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방법	총 배점	기준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	기관평가	○ 기관 신용평가등급	정량 평가	10	※정량평가 기준 참조				
2	징계이력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 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 한 등 징계를 받은 내용에 따라 적용)	"	10	※정량평가 기준 참조				
3	기술·지식 능력 (과업접근 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정성 평가	30	30	28	26	24	22
4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5	25	23.5	22	20.5	19
5	지원기술·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 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5	15	14	13	12	11
6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기타 특기사항	"	10	10	9.5	9	8.5	7
계				100					

○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기관 신용평가(10점)

구분	AA~AAA+	BBB~A+	B~BB+	CCC+ 이하
점수	10	9	8	7

※ '23년 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10점)

구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수	10	9	8	7

※ 최근 3년간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기술능력 평가 시 평가 착안사항

- 주요 과업내용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이력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수행 조직체계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
- 아울러, 기술능력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제안 설명,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발주기관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다.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안내

2. 협상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 순위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나. 협상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5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 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 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4. 과업 연구진 총괄표(서식 3 활용)
5. 연구진 이력사항 (서식 4 활용)

6.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조건

- 제안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비용부담

-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제안서 설명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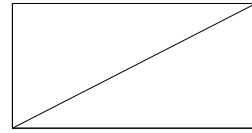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국토교

통부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국토교통부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책임자(PM) 등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제안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0)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학위	학사	○○○○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석·박사	○○○○ 전공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서식 5】의 본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